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예술인 안전 보험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2025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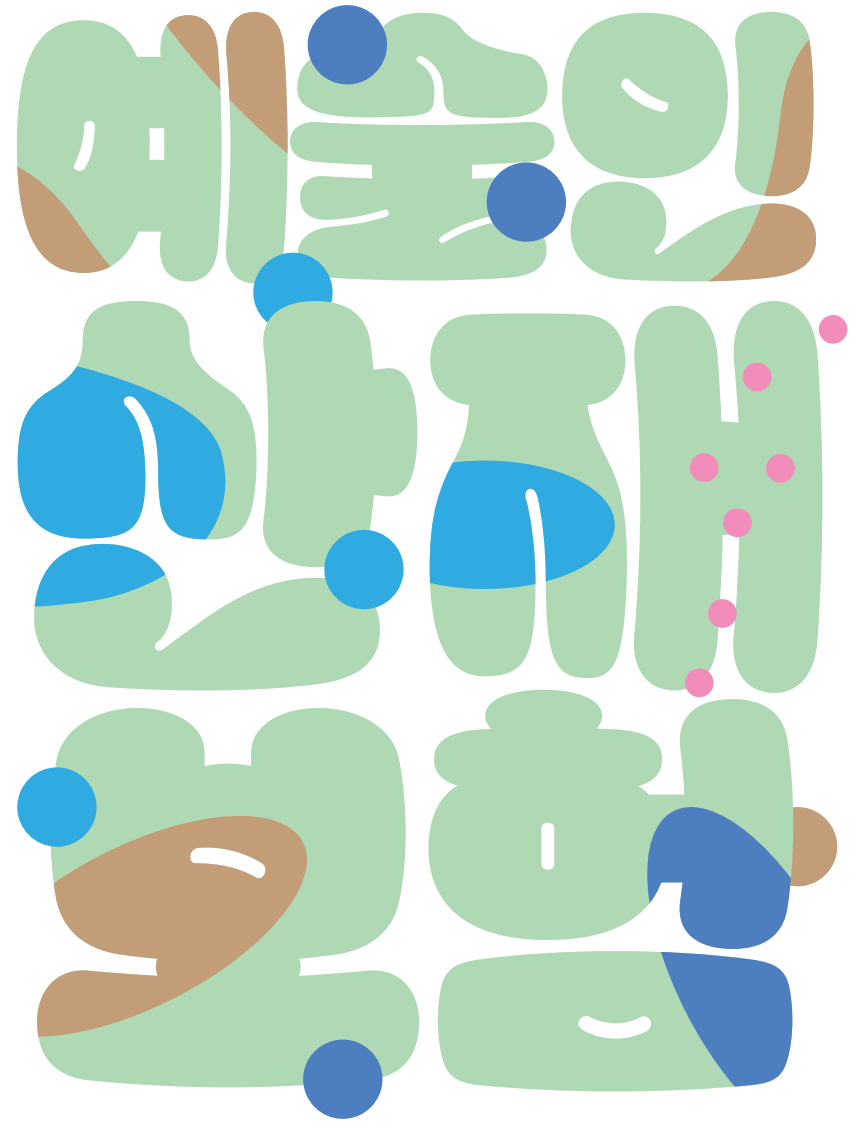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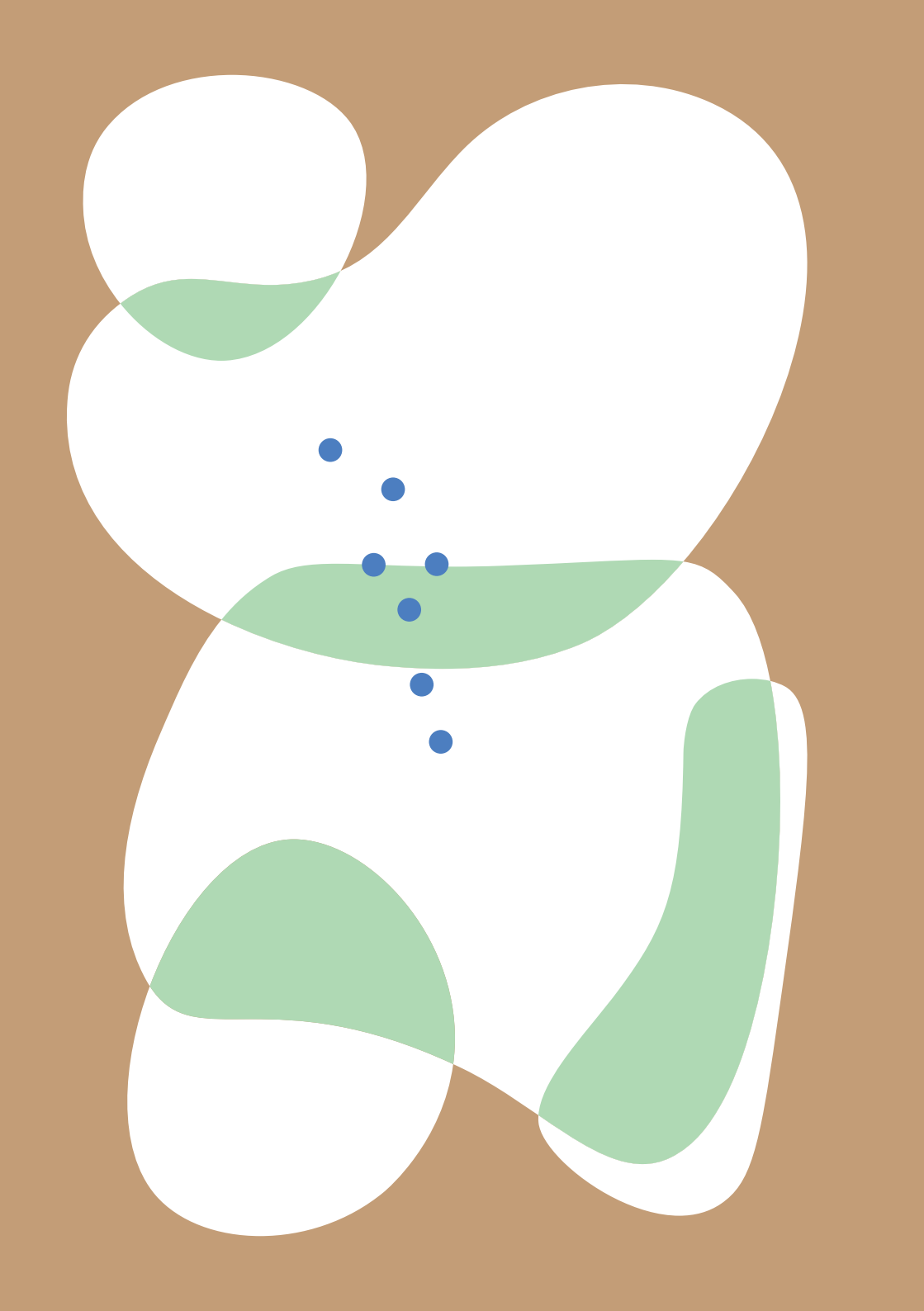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www.kawf.kr | wci.kawf.kr | 02-3668-0200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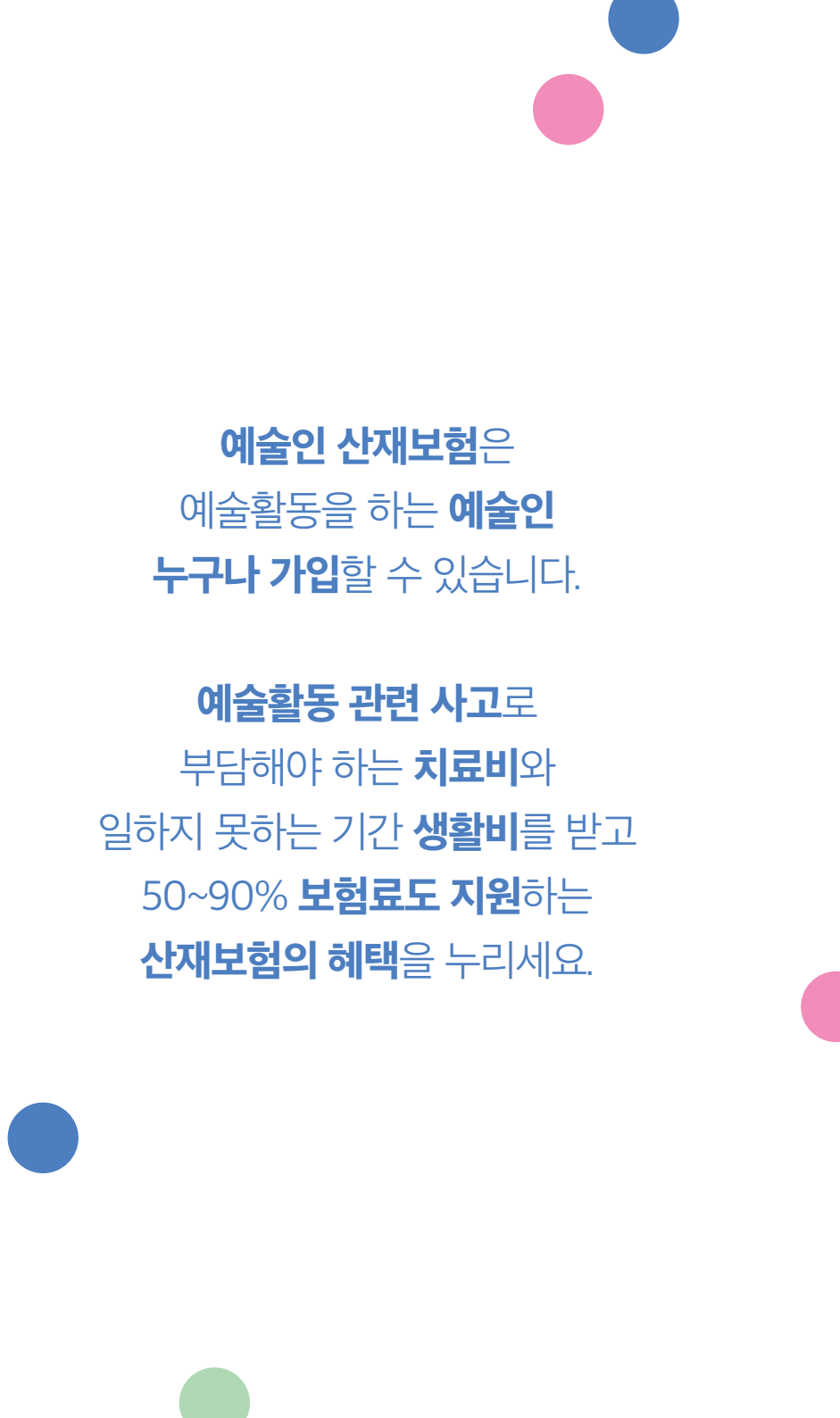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관련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생활비**를 받고
50~90% **보험료도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체크 리스트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꼭 필요한 정보로 건너뛸 수 있어요!

1 예술활동을 하는 중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YES

20p 이동

예술인 산재보험은



NO

11p 이동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2 예기치 않은 부상이 예술활동에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한 적이 있으세요?



YES

14p 이동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NO

12p 이동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3 타 보험과 비교해서 예술인 산재보험의 장점을 알고 계신가요?



YES

36p 이동

보험 가입 신청



NO

22p 이동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4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세요?



YES

23p 이동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NO

38p 이동

보험료 선택 및 납부

5 예술인 산재보험의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등의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YES

36p 이동

보험 가입 신청



NO

21p 이동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6 산재로 인정받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아시나요?



YES

60p 이동

청구 절차와 방법



NO

63p 이동

청구 조건

7 산재 증빙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YES

17p 이동

산재 청구로 실제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NO

주위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려 주세요!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장 지원사업을 알거나 참여한 적이 있으신지요?



YES

주위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려 주세요!



NO

82p 이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목차

!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10
!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
! 실제 산재 청구로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16

1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1 예술인 산재보험은	20
2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21
3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22
4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23

2 산재보험 혜택

1 요양급여	26
2 휴업급여	27
3 상병보상연금	28
4 장해급여	29
5 간병급여	30
6 직업재활급여	31
7 유족급여	32
8 장례비	33

3 가입·납부·변경·해지

1 보험 가입 신청	36
2 보험료 선택 및 납부	38
3 변경 및 해지	42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43
서식 2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46
서식 3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47
서식 4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48
서식 5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49

보험 가입

- Q1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 Q2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Q3 직장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인데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 Q4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Q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 Q6 원로예술인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Q7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납부

- Q8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Q9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0 장기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1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Q12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 Q13 보험이 만기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 되나요?
- Q14 월 납부 보험료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보험료 미납과 해지

- Q15 미납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Q16 예술활동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7 잔고 부족으로 미납 사실을 모르다가 부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8 산재보험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타 보험과의 관계

- Q19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의료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 Q20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Q21 민간 상해보험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 Q22 산재보험 가입 시 '보수등급'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건가요?

4 보험급여 청구

1	청구 절차와 방법	60
2	청구 조건	63
3	불승인의 경우	64
4	산재지정 의료기관	65

서식 6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66
서식 7	휴업급여 청구서	70

? FAQ 자주 묻는 질문	71
----------------	----

산재보상 범위

- Q23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Q24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Q25 진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Q26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Q27 해외에서의 활동 중 다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Q28 공연 계약 후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던 중 다쳐도 적용이 되나요?
- Q29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 Q30 예술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Q31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Q32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는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 Q33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 청구

- Q34 예술활동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예술활동 계약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Q35 상황이 위급해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Q36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받은 경우도 산재보험 청구를 해야 하나요?
- Q37 추가 부상이 발견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Q38 요양 치료 후 재발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Q39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Q40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Q41 산재보상 청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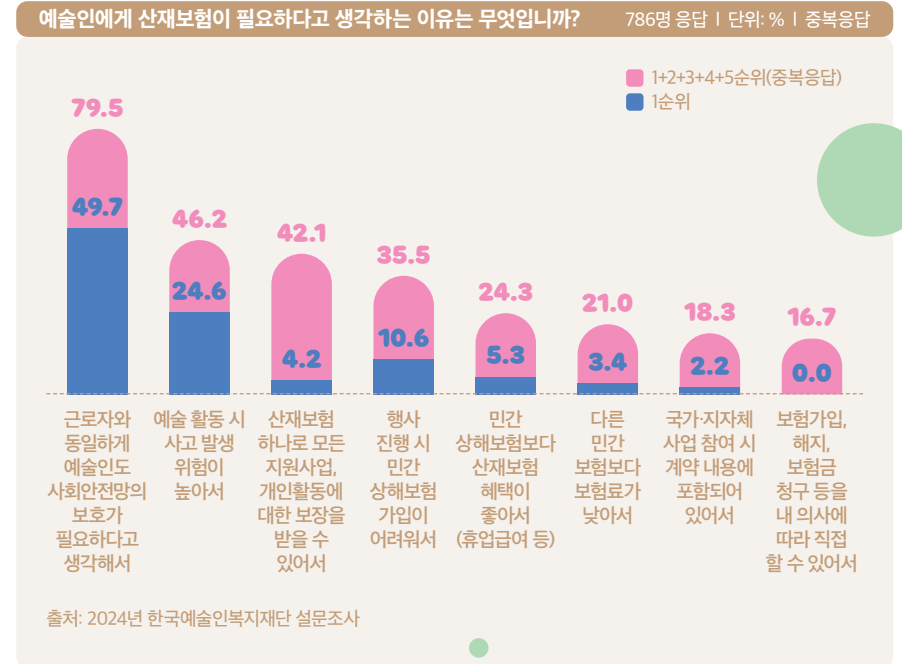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안내	8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8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사업 개요	84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2년부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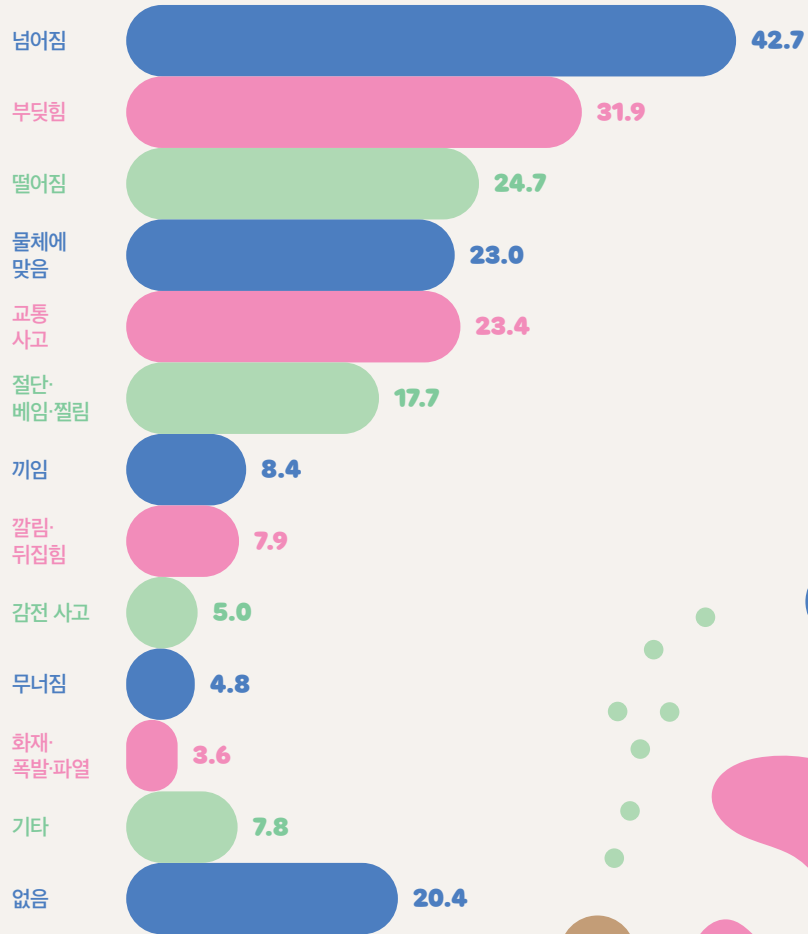
산재보험은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산재보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시 위험이 높거나 민간 보험 가입 시 애로사항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예술 활동 시 본인이나 주변이 당한 사고의 종류로는 '넘어짐'(42.7%), '부딪힘'(31.9%), '떨어짐'(24.7%), '물체에 맞음'(23.0%) 순으로 직접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응답하여, 신체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 과정에서 본인 및 주변이 당한 사고

786명 응답 | 단위: % | 중복응답



출처: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문조사

!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사례 요양급여 신청

“예술활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6p 참고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휴업급여 액수 계산

“녹화 중 발목을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27p 참고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1~3급)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

사례 상병보상연금 액수 계산

“드라마 출연 배우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촬영 도중 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 28p 참고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사례 장해급여 신청과 액수 계산

“영화 촬영 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하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경우 받는 장해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29p 참고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 상태가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례 간병급여 신청

“무용수로 공연 중의 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택에서 병간호를 받는 경우 장해연금 외에 간병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30p 참고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 31p 참고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32p 참고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 33p 참고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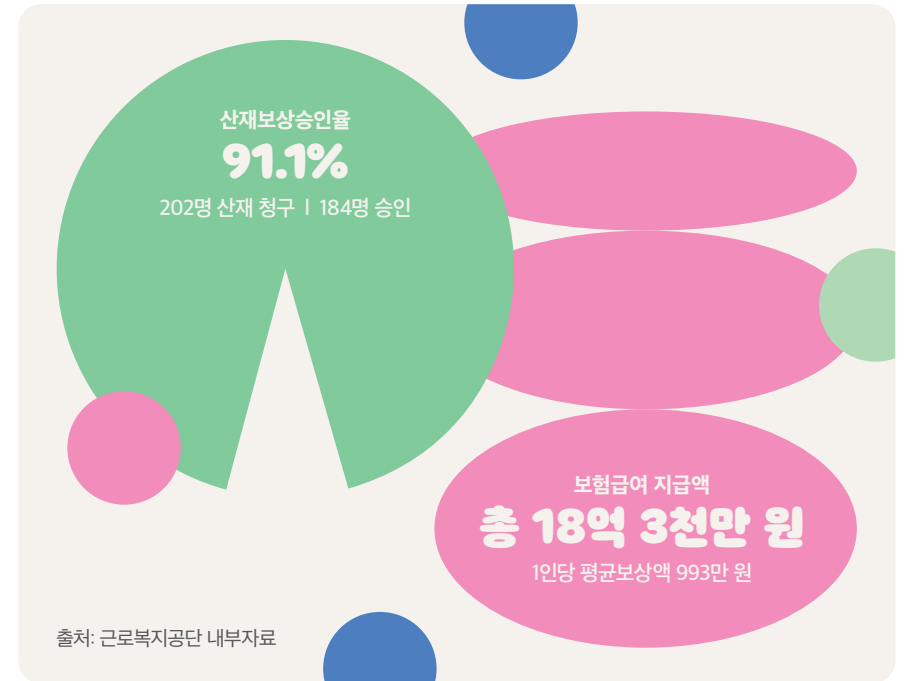
사례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방송 촬영 도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지급됩니다. 또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생활보조금)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실제 산재 청구로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2012년 이후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예술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141명, 2024년에는 184명**의 예술인이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았습니다.
2024년의 산재 승인률은 91.1%로, 202명이 산재를 청구하여 184명이 승인받고, 약 18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의
보상 청구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예술인 산재보험 사이트(wci.kawf.kr)에 업로드되어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보호받는 예술인,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산재보상 사례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 ① 예술인 산재보험은
- ②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 ③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 ④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1 예술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프리랜서 예술인도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하여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이 질병·사망·노령·실업·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의 감소에 처했을 때 보험방식에 따라 보장해 준다.

-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 노후소득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80년 발표된 이 권고안은 모든 시민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예술인도 창조적 표현을 책임지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이를 근거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과학의 특수성, 경영의 특수성처럼, 예술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술인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근로자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예술인 산재보험
개요	예술인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실질적 근로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안에 포함함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보험료 납부	전액 사업주 부담	사업주, 예술인이 1/2씩 부담	전액 사업주(본인) 부담
가입 의무	당연가입	당연가입	임의가입

중소기업사업주

-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형태로 보험 가입 시 사업장명은 본인 이름,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지정함
- ※ 단,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인은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로 승인될 수 있음

임의가입 방식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보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준보수액, 평균임금

- 기준보수액은 월 소득의 개념으로, 납부할 보험료액 및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됨
- 평균임금은 기준보수액을 30일로 나누어 하루 일당을 산정한 것
- 예술인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실제 수입 또는 계약 금액과는 상관없이 월 보수액 및 일 평균임금을 임의로 선택함

보험료를

-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보험료를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이것으로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정한 것
- 업종별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짐
-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 산출

3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 산재보험은 예술활동 중 재해에 대해 민간보험 대비 포괄적, 통합적 보장 혜택 제공

보장 금액 한도, 기간 제한 없음!

가입 시 연령 제한, 위험 고려 없음!

- 가입 연령 제한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음
- 상해 위험이 높은 일부 직군의 경우, 민간 상해보험 가입·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상해 위험에 따른 가입에 제한이 없음

구분	공적 보험	민간 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업무 중(예술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사고	외출 여가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사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가입 대상	나이, 병력, 장애여부, 직업위험성 등에 따른 보험가입제한 및 보험료 인상 없음	나이, 병력, 장애여부, 직업위험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납부보험료 책정하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요양급여 (치료비)	○ (치료비 실손보상, 지급한도 없음)	○ (약관에 따른 치료비 실손보상, 지급한도 있음)		
휴업급여 (생활비)	○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원)	X		
장해급여 (장해보상)	○ (장해등급 및 보험가입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약관에 따른 정액보상)	X	
유족급여 (사망시)	○ (산재로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지급)	○ (약관에 따른 정액보상)	X	

※ 민간 보험은 보험가입 시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상이함
 ※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과 산재보험 간 치료비 중복 지급은 불가하나, 보험 특약조항에 따라 중복지급 가능할 수 있으며,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 청구를 달리 할 수 있음

4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행정업무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보험 사무대행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납부보험료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가입지원 대상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에 해당되는
업무내용으로 신청 가능

✓ 보험료지원 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험사무위탁을 완료하면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보험 사무대행

가입, 정보 변경, 해지 신청 대행 및 관련 상담

✓ 보상 관련 상담

산재보상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가 연계 상담

✓ 보험료 지원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 분기별 환급 지원
1등급 신규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1등급 재가입자 및 2~12등급 가입자는 50% 지원
(해지 시까지)

보험료 지원 일정 분기별 환급 지원

보험료 납부 월 예술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급월 재단	5월			8월			11월			2월		

- 해당 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산정하여 환급 지원
- 전 분기 미납액 납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납부한 보험료 확인하여 환급 지원
- 예술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재단에서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지원
 ※ 미납 및 일부금액만 납부한 월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보험료 납부여부는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음

산재보험 혜택

- ① 요양급여
- ② 휴업급여
- ③ 상병보상연금
- ④ 장해급여
- ⑤ 간병급여
- ⑥ 직업재활급여
- ⑦ 유족급여
- ⑧ 장례비

1 요양급여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

보장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산정 기준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등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 ※ 치료비(비급여대상* 제외)는 산재 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가능

*비급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 ③ 상급병실 사용료(부득이한 경우 제외)

요양급여의 한도

“예술활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처럼 일정 금액의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한도 기준이 없음.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4일 이상 활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산정 기준

-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에 생활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TIP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과 월 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휴업급여액이 커진다.

예) 1등급 가입 시 평균임금 80,240원의 70%인 56,168원이 1일당 휴업급여로 산정되고, 12등급 가입 시 평균임금 258,132원의 70%인 180,692원이 1일당 휴업급여로 산정된다.

휴업급여 지급 예시

“지난 해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방송인입니다.

녹화 중 발목을 다쳐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지난 1월 22일 사고 시부터 2월 20일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61,100원 × 70%) × 30일 = 3,383,100원

6등급 일 평균임금

1.22~2.20.

6등급의 일 평균임금은 161,100원이므로 휴업급여액은 3,383,100원 지급('25년 기준)

3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름

상병보상연금 지급 예시

“드라마 출연 배우입니다. 기준보수 5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2022년 3월 1일 촬영 도중 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2024년 3월 1일 이후에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이 경우는 중증요양상태 등급 1급에 해당

$$144,920\text{원} \times 329\text{일} \div 365\text{일} = 130,626\text{원}$$

5등급 일 평균임금 중증요양상태 1급 연금일수 1일 당 상병보상연금액

5등급의 일 평균임금은 144,920원이고, 중증요양상태 1급 연금일수 329일을 365일로 나눈 금액 130,626원이 1일 당 상병보상연금액이며, 매월 산정하여 지급('25년 기준)

4 장애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장애급여 종류

구분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일시금
장애등급별 보험급여 지급대상	제1급~제3급	
	제4급~제7급	
		제8급~제14급

※ 장애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함

산정 기준

- 장애급여액은 장애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차등 지급하며,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및 산재보험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장애급여는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일시금 일수 또는 연금 일수만큼 지급

장애급여 지급 예시

“기준보수 10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영화배우입니다. 모 영화사와 사극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한 후 영화촬영 도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덕분에 요양 치료를 받았습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운동기능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액은 얼마인가요?”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게 된 경우, 장애등급 7급에 해당됨
장애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수급권자는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일시금 중 선택 가능

장애보상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225,780\text{원} \times 138\text{일} \div 12\text{개월} = \text{월 } 2,596,470\text{원}$
10등급 일 평균임금 장애등급 7등급의 연금일수 연금지급액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신청할 경우 $225,780\text{원} \times 616\text{일} = 139,080,480\text{원}$
10등급 일 평균임금 장애등급 7등급의 일시금일수 일시금 지급액

5 간병급여

6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 대상

구분	지급 대상
상시 간병 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 급여	③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④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지급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또는 산재승인 후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 ②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 ③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지급 금액

구분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 미지급

지급 내용

구분	지급 기준 및 내용
직업훈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직업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훈련기간 또는 시간에 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예시

“무용수로 활동 중인 저는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 후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요양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해 자택에서 병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연금 외에 간병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1일 수시 간병급여 금액(27,450원) × 간병 기간에 대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별도 지급

7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급자격자

구분	자격 기준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25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름

지급 방법

구분	지급 방법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지급 금액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유족보상연금액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8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지급 기준

·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

구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지급대상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례를 지낸 유족 외 사람
지급액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례비 지급 기준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2025년 기준 장례비 최고금액 18,685,600원, 최저금액 13,451,380원

장례비 지급 예시

“동료인 뮤지컬 배우가 기준보수 2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연 출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없어 동료인 제가 장례를 진행했고 장례보조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용은 얼마인가요?”

유족이 아닌 동료가 장례를 행했을 경우

2등급 평균임금 96,410원의 120일분 11,569,200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5,000,000원을 지급

유족인 배우자가 장례를 행했을 경우

2등급 평균임금 96,410원의 120일분 11,569,200원이며, 실제 소요금액이 장례비 최저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최저금액인 13,451,380원 지급

가입·납부· 변경·해지

- ① 보험 가입 신청
- ② 보험료 선택 및 납부
- ③ 변경 및 해지

④ FAQ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함

가입 절차 및 기관별 담당 업무

1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예술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 가능,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면 보험료 지원 가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접수 및 심의



2 산재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입신청



3 서류 접수 & 가입 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서류 접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대행



4 산재보험 가입 승인

근로복지공단
 가입 승인,
 보험료 산정



5 보험료 고지서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징수,
 고지서 발행, 자동이체,
 가상계좌 발급



서류 준비 및 가입 방법

1 서류준비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1건

예술활동증명을 처음 신청하거나 미완료인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회원가입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재신청하기 → 기본정보 입력 → 예술활동증명 내용-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선택 →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첨부 → 신청하기
 ※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산재보험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한정적인 절차로
 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 함

2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wci.kawf.kr → 가입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사무위탁서 작성 후 제출

신청서 양식: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업소개 → 가입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방법 43~46p 참고
 ※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 희망 시 사전 문의 필수

- 전자우편**
 - insure@kawf.kr
- 우편·방문**
 - (04637)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2 보험료 선택 및 납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보험 유지에 부담이 없도록, 기준보수액(등급) 및 월 보험료를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예술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

보험료 선택

- 기준보수액과 월 보험료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 높은 보험료를 낼수록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짐
- ※ 요양급여는 모든 등급 혜택 동일, 요양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험급여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상액이 상이함

2025년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 (1개월)	평균임금 (1일)	월 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6.6/1000	사업서비스 직군 8.6/1000
1등급	2,440,633원	80,240원	16,100원	20,980원
2등급	2,932,530원	96,410원	19,350원	25,210원
3등급	3,424,430원	112,580원	22,600원	29,450원
4등급	3,916,320원	128,750원	25,840원	33,680원
5등급	4,408,220원	144,920원	29,090원	37,910원
6등급	4,900,120원	161,100원	32,340원	42,140원
7등급	5,392,020원	177,270원	35,580원	46,370원
8등급	5,883,920원	193,440원	38,830원	50,600원
9등급	6,375,820원	209,610원	42,080원	54,830원
10등급	6,867,710원	225,780원	45,320원	59,060원
11등급	7,359,610원	241,960원	48,570원	63,290원
12등급	7,851,515원	258,132원	51,810원	67,520원

직업군에 따른 보험료 차이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령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업무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2025년 기준, 예술인 직업군은 대부분 6.6/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획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어 8.6/1000 요율을 적용 받음
-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포함

월 보험료 계산

- 1~12등급의 등급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

월 보험료 = 기준 보수액 × 보험료율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대부분의 예술직군

6.6
1000

보험료율

일부
기획 직군

8.6
1000

실연 예술인이 7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기준보수액은 5,392,020원, 보험료율은 6.6/1000이므로
월 보험료는 5,392,020원 × 6.6/1000 = 35,580원

보험료 납부 방법 (택 1)

고지서 납부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우편물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마감일은
10일까지, 10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문자로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납부

매월 직접 이체가
번거로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산재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2 보험료 선택 및 납부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예술인의 직업군 (예시)		적용 사업 종류	보험료율
창작 예술가	작가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게임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화가	문학번역가, 영상번역가	그 외 기타 기술 서비스업(90713)
	조각가	화가, 서예가, 단청원, 탕화원, 회화복원가, 조각식각가, 식각사,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 국악 작곡가, 국악 편곡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안무가	안무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가(사진기자 제외)	사진 촬영 및 처리업(90712)
	건축가	건축가, 건축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90709)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액세서리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삽화가, 색채 전문가, 활자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 (90711)
	공예가	도자기 공예가, 조화 공예가, 목 공예가, 석 공예가, 양초 공예가, 종이 공예가, 그 외 공예가, 귀금속 세공원, 보석 세공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6.6/1000

예술인의 직업군 (예시)		적용 사업 종류	보험료율
실연 예술가	무용수	발레각색가, 무용수, 발레무용수, 대중무용수, 백댄서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연주가 및 성악가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가수, 합창단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감독 및 지휘자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 프로듀서, 공연장 예술감독,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배우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전통무예인은 제외)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기타 실연 예술가	꼭에서, 마술사, 비보이, 모델, 보조연기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기술 스태프	기술 스태프	편집감독, 조명감독, 촬영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촬영기사, 영상기사, 조명탁조정원, 녹화기사, 편집기사
그 외의 예술 스태프		무대의상관리자, 소품담당자, 연출보조원, 분장사, 무대가발 담당자, 특수분장사, 입장권 판매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기획 스태프		미술품 감정사	그 외 기타 기술 서비스업(90713)
		예술품 중개인, 예술품 경매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
	공연 대리인, 전시기획자,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사업서비스업 (90104)	

6.6/1000

8.6/1000

3 변경 및 해지

정보 변경, 월 보험료 변경, 보험 해지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변경 또는 해지 접수

거주지,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변경'을 통해 변경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가 정해지므로, 주소 이전 시 즉시 변경신청 필수

월 보험료 변경을 원할 경우

-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월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 변경 불가
- 12월 중 신청자는 1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1월 중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됨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변경'을 통해 변경 신청

보험 해지를 원할 경우

- 보험을 가입한 연도가 지난 경우에만 해지 가능하며, **보험 가입 당해 연도에는 해지 불가**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해지'를 통해 해지 신청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6. 30.>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근로자 사용 근로자 미사용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일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한 예 북 (법인 이름)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물 수령지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70-15 3층 (실 거주지/보험료 고지서 수령지)	
	전화번호	0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0	전자우편주소 insure@kawf.kr (법인이메일)
	성명	한 예 북 (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1 신청인 란 가입신청자의 인적사항 작성
*사업장(상호)명은 본인 이름

가족종사자 주소 사업주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자녀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 휴대전화

기준보수액	7 등급(5,392,020 원)	*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 선택
업무 내용	연기자, 조명스태프, 연극연출, 구성작가, 만화가, 무용수, 성악가, 큐레이터, 석공예가, 드럼연주, 작곡가 등	* 본인의 주요 예술활동 내용 작성

2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 기준보수액표 참고하여 본인이 원하는 등급 기재

보험가입 신청내용	특정업무 종사여부	[] 분직직업을 수행하는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 날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특정업무 종사경력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픽서비스업자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한 예 북 0000년 00월 00일 (서명 또는 인)에 북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함)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종사자의 경우만 해당함)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 상 불이익 없음 동의여부 체크 후 서명 또는 날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한 예 복** **한서명 복**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한 예 복** (**한서명 복**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필수)
산재보험 가입 업무처리 관련 행정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여부 체크 후 서명 또는 날인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이 제외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7.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가족종사자'란은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에 "√" 표시를 합니다.
8.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 특정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수용당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1
신청인 란
가입신청자의
인적사항 작성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성 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생 년 월 일	987654 (주민번호앞자리)
사업장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이름/업종(예시: 홍길동/도매업)으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1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월)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월)
1등급	2,440,633	80,240	7등급	5,392,020	177,270
2등급	2,932,530	96,410	8등급	5,883,920	193,440
3등급	3,424,430	112,580	9등급	6,375,820	209,610
4등급	3,916,320	128,750	10등급	6,867,710	225,780
5등급	4,408,220	144,920	11등급	7,359,610	241,960
6등급	4,900,120	161,100	12등급	7,851,515	258,132

가. 보수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며, 상기 보수액 중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급별 보수액(월)이 적용됩니다.

나. 등급별 보수액(월)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보수액 변경결)하며, 매년 등급(보수액)은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 일까지만 변경 가능(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년 등급 유지)하고,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 선택한 보수가 지자체 복지사업 등에 소득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입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체크란
산재보험 관련
내용 읽고
1~3번 □에
√표시

2 가입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상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영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 건설업 사업주의 경우 본사(사무실)와 현장을 각각 가입하여야 모든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폐업 제외)합니다.
 라. 2023.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어 비전속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산재보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매달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함

나.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으니, 법정 납부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월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2.10이고 1월 보험료를 4.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11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조치함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 월 0 일

신청인 : **한 예 복** **한서명 복**는 인)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별지 제43호 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010-0000-0000	사업의 종류

1 사업장명 본인 이름 기재 *예술인은 개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1인 사업장과 같은 개념인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보험에 가입함

2 소재지 가입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와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3 전화번호 본인 휴대폰번호 작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관련 사무
 1. 보수총액 및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5. 피보험자간의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 신고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무(고용보험에 한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기 위탁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함

사무처리 시작 연월일 (예정) 년 월 일

위와 같이 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 사무의 처리를 위탁합니다.

위탁사업주 주소 (본인 주민등록지) 0000 년 00 월 00 일
 성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한 예 복 (본인 이름)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표 귀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 관련 사무 수탁을 []승낙 []불승낙 합니다.

불승낙 사유	
보험가입자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 칭 _____ 년 월 일
 소재지 _____
 대표자 서명인란 서명날인 필수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보험 유지 중 거주지,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7. 1.>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명칭 (본인 이름)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전화번호 (본인 연락처)	
소재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본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YYYY.MM.DD	(개명 시 변경된 이름 기재)
	전화번호	YYYY.MM.DD	(변경된 전화번호 기재)
	휴대전화	YYYY.MM.DD	(변경된 휴대전화 기재)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YYYY.MM.DD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우편물 수령지	YYYY.MM.DD	(변경된 우편물 수령지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 변경신청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작성란만 기재		

1 기본 인적사항 사업장·사용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2 변경사항 변경항목 선택하여 변경일, 변경내용 기재

3 서명인란 서명·날인 필수

사업장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 변경신청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작성란만 기재

건강보험증 수령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가입자)

0000 년 00 월 00 일
 한 예 복 (본인 이름)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매해 12월 말~다음 해 1월 말 보험료 등급 변경 희망자만 신청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1.8.31., 2022.2.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신고서**
 가족종사자

* 뒤 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주)	상호(법인명) 한 예 북 (본인 이름)		
	소재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번호 010-0000-0000 (본인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E-mail	
	대표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1
기본 인적사항
상호명·대표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가족종사자	대표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준보수신고 등급 및 보수	10 등급(6,867,710 원) (*변경을 희망하는 등급 작성)
-------------------	--

기준보수신고 등급 및 보수	10 등급(6,867,710 원) (*변경을 희망하는 등급 작성)
-------------------	--

2
변경사항
기존의
본인 등급에서
변경을 원하는
등급과 보수액 작성

(2025) 년도 기 준 보 수 액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440,633	80,240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5등급	4,408,220	144,920
6등급	4,900,120	161,100				
7등급	5,392,020	177,270				
8등급	5,883,920	193,440				
9등급	6,375,820	209,610				
10등급	6,867,710	225,780				
11등급	7,359,610	241,960				
12등급	7,851,515	258,1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신고인(보험가입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0000 년 **0** 월 **0** 일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 기준보수액
 등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보험 가입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 해지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명칭 한 예 북 (본인 이름)	전화번호 010-0000-0000 (본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번호(00000)	
회급(반환) 계좌 사원신고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명 한예북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본인 전화번호) 우편번호(00000)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가입유지의사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으로 자격상실한 근로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0000.00.00. * 근로복지공단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짜로 해지처리됨			

1
기본 인적사항
사업장·사용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2
신고(신청)사유
'그 밖의 사유'
가입유지의사 없음
으로 설정

3
사유발생일자
해지신청일자 작성,
공단에서 접수한
사유발생일자
다음날부터
보험관계
소멸 처리됨

4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명칭 흡수하는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신청인(가입자)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0000 년 **00** 월 **00** 일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 가입

Q1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업무 이외에 프리랜서 예술활동을 하신다면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예술활동을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장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이중가입 가능)

Q3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진작가인데, 최근 한 기업의 홍보실 사진 담당자로 입사 예정입니다. 직장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인데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A 해당 직장의 사진 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별도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4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 가입은 예술인산재보험(<https://wci.kawf.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서류작성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재단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통장사본 1부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하며,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필요한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실적자료 1건을 준비 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과 산재보험 가입은 각각 별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이는 재단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절차일 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술인이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장 대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 사무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외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업무내용이 「예술인 복지법」상 인정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며, 예술활동을 업무내용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 시 예술활동 중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6 원로예술인으로, 서류작성이 서둘러 대리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원로예술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으나, 본인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Q7 재단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 이후에도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사무위탁 시점 이후부터 부과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사무 위탁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Q8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므로, 분할 및 일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Q9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서 재발송 요청 또는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납부고지서 수령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10 장기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간 해외 체류 시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교부받은 고지서로 대리인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Q11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술인이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형태의 산재보험은 가입 시 보장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예술활동 계약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가입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술활동 계약과 관계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 유지되다가, 해지 희망 시 별도로 보험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지됩니다. 보험혜택 또한, 계약서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 유지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A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셔야 하고,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을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적인 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13 보험이 만기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 되나요?

A 산재보험은 만기의 개념이 없는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환급 개념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일부 민간 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Q14 월 납부 보험료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매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음해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액이 고시되며, 가입자는 다음 해 납부할 등급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해 보험료를 안내하고, 보험료 변경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기준보수액 변경에 따른 우편물을 발송하여 안내하며, 다음해 1월 말까지 재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미납과 해지

Q15 미납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2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관리지사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락하셔서 보험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별도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16 지난 3월 계약 종료 후, 쉬다가 최근 10월 예정된 새로운 공연 계약을 했습니다. 4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예술활동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보험 해지 신청 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체납 등으로 계속하여 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분(납부기한 5월 10일) 이후 보험료를 7월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 관계가 소멸되었을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17 올해 2월 1일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4월 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5월 20일에 연극 공연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잔고 부족으로 미납 사실을 모르다가 부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월 보험료(납부기한 5월 10일)를 체납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인 5월의 다음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날 이후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2월 보험료(납부기한 3월 10일)가 체납되었다면,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인 3월의 다음 다음 달인 5월 10일이 지난, 5월 20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체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월 산재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18 산재보험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최초 산재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과의 관계

Q19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의료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은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사고(출퇴근이나 출장이 아닌 교통사고,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은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휴업급여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민간 보험의 경우 특약 사항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며, 가입 연령 제한이나 치료비 상한 한도가 없다는 점 등입니다.

Q21 민간 상해보험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치료비(요양급여)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민간 보험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일부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지급 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간 보험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는 민간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휴업급여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22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보수등급'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 건가요? 산재보험 기준보수가 건강보험 등 여타 보험의 비용과 요율에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스스로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료 및 지급받을 보험급여 수준을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소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보험료 및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복지사업 등에서 선택한 보수를 소득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확인되고 있으니 이 경우 재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청구

- ① 청구 절차와 방법
 - ② 청구 조건
 - ③ 불승인의 경우
 - ④ 산제지정 의료기관
- ⑤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청구 절차와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

산재 청구 절차

산재 발생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또는 진료(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STEP 1

산재 청구 서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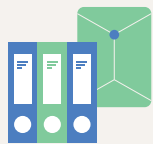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초진병원의 의사 소견서 요청하여 준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 근로복지공단, 재단으로
신청서 작성 문의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공단 또는 재단으로
신청서 작성 문의

STEP 2

산재 청구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재할보상부에
온라인/팩스/우편/방문/의료기관대행 접수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에서 서류 제출 대행 가능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직접 온라인/팩스/우편/방문 제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 및 절차 진행이 용이하므로 지정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STEP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 여부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업무상 질병 청구 시 7일 이상 소요)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STEP 4

산재 승인 시 급여 지급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 불승인 시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STEP 5

(해당 시) 휴업급여 청구 서류 공단 제출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STEP 6

(해당 시) 승인 시 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 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 검토 기간은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됨

① 청구 절차와 방법

산재 청구 준비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 근로복지공단 서식 사용하되, 의사가 별지 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로 산재신청이 가능함
- ※ 기타 공단의 요청 자료(재해 경위서, 진료기록부 등)

청구서 작성시 중요사항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원인 및 상황 등 '예술활동 관련 재해경위'를 상세히 기재
- 최초 방문하여 치료 받은 병원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요청(병원 담당 의사 작성)
- 진료 기록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별도 첨부 필요(산재 승인 시 소급 지원됨)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청구서' 작성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사에 직접 청구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 이외에도 아래의 경우 해당급여를 꼭 별도로 신청하세요

새로운 상병이 진단될 경우	재발된 경우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청구	직업재활급여 신청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의 경우
장해급여 신청	간병급여 신청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② 청구 조건

산재보험 가입 기간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와 그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인정기준 세부내용

승인

- 업무수행 행위 및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준비, 휴식,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관련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화재 등 활동장소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과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불승인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예술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행위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를 준용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음.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
- ※ 보험 청구 시 보험료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료 완납한 후 서류 접수 가능

3 불승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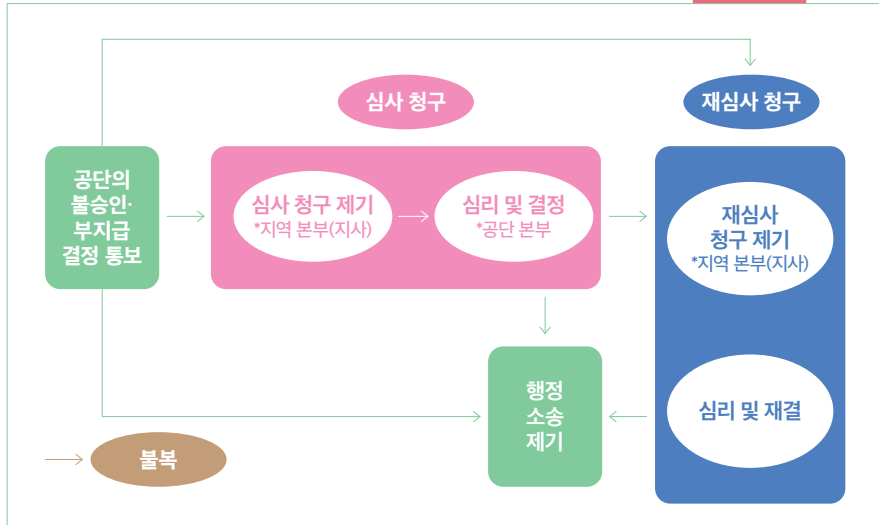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본부에 심사 청구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사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 청구서)로 함
 - ①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②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④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⑤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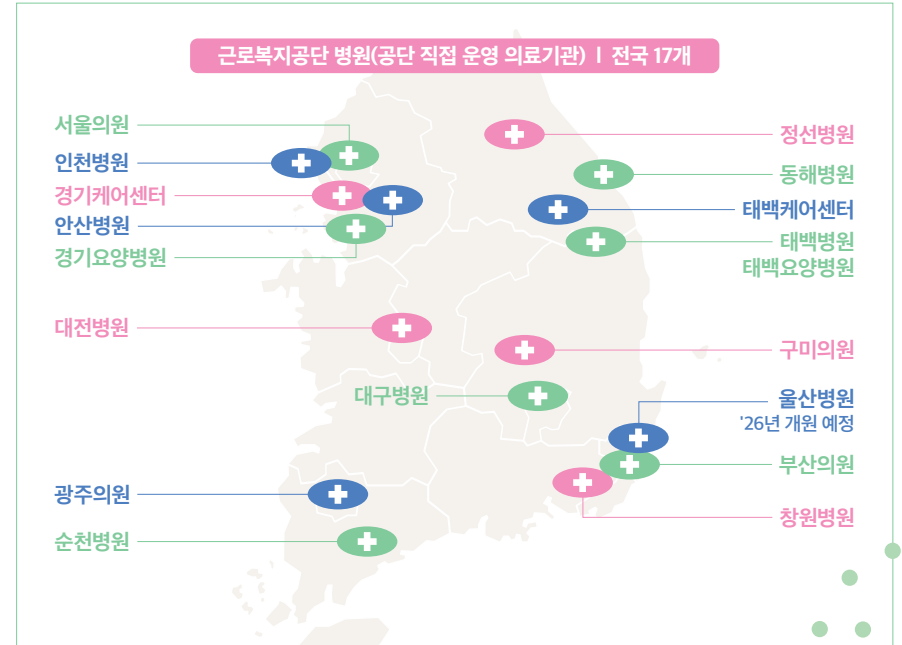
위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제기
-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사(지역본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산재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산재지정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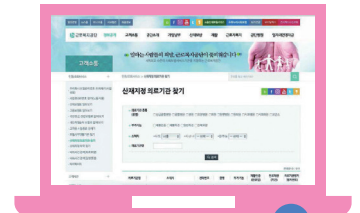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지정 의료기관 | 전국 약 6,465여 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58개	315개	978개	474개	2249개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472개	1370개	57개	489개	3개
총 6,465개				

※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 의료기관(2025년 1월 기준)



서식 6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1

재해자

- 산재보험 가입자인 (재해를 당한 자) 정보 기재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실제 사업주' 체크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2020. 12. 29., 2021. 12. 30., 2022. 12. 1., 2023. 7. 5., 2024.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 붉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 예 북 (본인 이름)	9 8 7 6 5 4 1 2 3 4 5 6 7
주소	휴대전화: 010-0000-0000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화번호: 02-0000-0000
재해 발생 일시	채용일자: 0000년 0월 0일 (산재보험 가입 성립일자 기재)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예술인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사업주(등업자포함)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사업주
근로자유형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사업주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학생연구자 <input type="checkbox"/> 건강손상자녀 <input type="checkbox"/> 특수형태근로종사자(23.6.30. 이전 재해)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생

2

- 재해 관련 내용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중 해당란에 체크
- 사업장관리 번호 기재
- 재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것

신청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무상 사고 <input type="checkbox"/>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한 예 북 (본인 이름) 사업주명 한 예 북 (본인 이름)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장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직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겹쳐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요청·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연락처(), 재해자외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3

- 서명인란
- 서명·날인 필수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신청인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뒷 면)

다른보상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 예 2. [] 아니요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익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공공 미디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할 경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면 직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귀하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간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	건강검진기록, 진료내역, 장애인증명서	10년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문자, 전자우편, 감사편지)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5년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일상복귀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공단 및 공단이 지정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직업복귀 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복귀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직장복귀지원 상담과 직업복귀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지원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계약된 수탁기관	- 일상복귀지원(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멘토링 희망 찾기)사회적응기초화합프로그램 - 직업재활서비스(원격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3년

[선택] 원장직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사업주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 직장복귀 지원 안내·상담 - 직장복귀희08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정보제공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신체증인정보(의료기관명, 상병명, 요양기간, 장애등급, 수습여부), 직장복귀소견서	3년

성명 한 예 북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인민용시 60g/㎡)

서식 7 휴업급여 청구서

1

기본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12.12., 2019. 8. 12., 2020.12.04., 2021.07.02., 2023.07.05.>

산업재해보상보험
[V]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V]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성명 한예복 (본인이름)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재해발생일		0000년 00월 00일
수령계좌	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 [] 예 [V] 아니오		
	은행(증권사)명: △△은행 (보험료 수령 계좌 작성)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 한예복)
청구기간	[V] 보통계좌 []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암류금지계좌)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 일간)
확인사항	① 청구기간 중 취업(지영업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업함 [V] 취업하지 못함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예 [V] 아니오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예 [V]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자동지급신청	※ 유의사항: 위 확인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차 지급분 부터(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V] 예 [] 아니오		

2

수령계좌 및
청구기간
급여 수령계좌
작성 및 해당하는
요양기간 작성

0000년 0월 0일	청구인 한예복 (해당하는 인) ☎ 010-0000-0000
본인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신청서 작성 시 (해당하는 인) ☎ 010-0000-0000	고용, 산재보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3

확인사항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취업기간 등에는 지급되지 않음

4

서명인란
서명·날인 필수

210mm×297mm(신문용지 51g/㎡)

4 보험급여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보상 범위

Q23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면 재단 산재보험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접수를 한 다음 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4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예술활동과 관련된 재해(통상의 출퇴근재해 포함)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가입일 이후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5 진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처럼 일정 금액의 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한도 기준이 없습니다.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만 판단이 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요양급여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Q26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명확한 재해발생경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산재 청구 절차와 마찬가지로 질병 원인에 대한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Q27 해외에서의 활동 중 다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업을 위한 예술활동은 사안에 따라 출장 중 재해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Q28 공연 계약 후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던 중 다쳐도 적용이 되나요?

A 예술활동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연습, 단체 연습(리허설 등), 대관 장소에서의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에서 개인 교습(사설학원) 장소를 지정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청구 과정에서 해당 교습이 예술활동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9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작품 출연이 결정되어, 공연 제작사를 통해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0 예술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예술활동 중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사유로 인한 다툼 등으로 발생된 제3자의 폭행은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1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2016년 9월 29일부터 특정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업무완수 후 자택 등으로 복귀하는 과정(출퇴근과 유사한 해석)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위해 업무 수행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업무진행 중 A 촬영장에서 B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업무의 연장 과정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통상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촬영을 마친 후 회사 지원 차량으로 집으로 이동할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길) →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됨	●
예시 2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상 지시에 따라 촬영장에서 다음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 → 업무의 연장 과정 중 사고로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됨	●
예시 3	주체가 다른 두 개의 계약에 의하여 한 촬영을 마친 후 다른 계약에 의한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 → 하나의 계약에 의해 업무 완수 후 복귀하는 과정, 또 다른 계약에 의해 특정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의 사고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임	●
예시 4	촬영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할 경우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Q32 활동 중 재해를 당해 병원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는 중에 일을 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A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단기간 취업(일)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추후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부분 휴업급여는 산재를 당한 예술인이 취업이 명백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양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취지에서 운영(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Q33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활임금을 보조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정(확정)되어 있는 예술활동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 예술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휴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

Q34 예술활동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예술활동 계약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예술인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스스로 사업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을 통한 예술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더라도 해당 고용주(사업주)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청구 시 고용주(사업주)에게 확인 의무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예술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Q35 상황이 위급해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현물 급여(병원에서 받는 치료 그 자체)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된 후 요양비 청구를 하면 산재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의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6 방송 촬영 도중 부상을 입고 바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받은 경우도 본인이 별도로 산재보험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네. 산재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 산재청구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Q37 추가 부상이 발견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혹은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상병의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8 요양 치료 후 재발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질병이 재발되거나 다시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여 다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주소지 관할 지사나 최종 치료를 받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관할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신청 및 재요양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사유, 재요양 신청 상병과 최초 승인 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재요양에 의한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재요양 승인 이후의 요양과정은 최초 요양과 동일합니다.

Q39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험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다음 다음 달 납부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그날 이후 보험급여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다음 다음 달 납부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40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병원을 옮겨 치료 받고자 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서'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의 소견을 기재해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지사에서는 산재 근로자 및 예술인의 생활 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의료기관 변경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해 줍니다.

Q41 산재보상 청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재보상 청구 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누구나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에서 산재 청구 보상관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청구 시 발생하는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해 1:1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예술활동증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사업 개요

예술활동증명 안내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증명 방법 및 제출자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실적자료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타 복지사업 신청 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함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간·공연·전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 실적이 있는 예술인 •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술활동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권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해당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계좌주명), 입금정보(입금일자·입금액·입금자) 자료 제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제출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자 이수증,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준 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오랜 기간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력단절예술인: 질병, 육아,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 자료 및 경력단절 전·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특수한 작업 방식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진행절차

- 예술활동증명 진행 절차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 미술(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총 15개 분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진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 예술활동증명 → 신청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전자우편 개별 안내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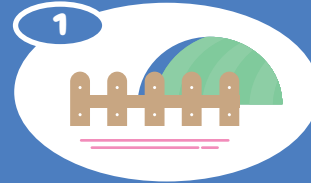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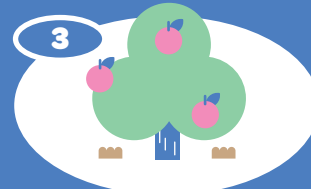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1 예술활동 기반 예술인복지지원 강화



2 선제적 예술인 지위보장체계 확립



3 함께하는 예술사회 조성



4 지속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미션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발전에 이바지



비전

예술활동 안전망과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예술인 복지 전문기관



존중·협력



적극·공감



전문·혁신



윤리·공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사업 개요

예술인 신고

- 지원내용** •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등
- 지원대상** • 예술활동 관련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
•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본인, 제3자(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
- 공고일** • 상시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 지원내용** • 예술인조합 결성 지원
- 지원대상** •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위반 신고, 계약 상담
- 지원대상** •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전자계약체결서비스를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예술단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 공고일** • 상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지원내용** •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 지원
단체 찾아가는 교육
개인 온라인(동영상) 교육
개인 주제별 특화 특강
- 지원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 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공고일** •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1:1 상담(12회 한도)
•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 공고일** • 2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개월 50%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공고일** • 2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지원내용**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 보험료 50~90% 지원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지원대상** • 보험 가입: 예술활동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공고일** • 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및 상담
-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사업장
- 공고일** • 상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사업 개요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 지원내용** •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
- 공고일** • 하반기(예정)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지원내용**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지원대상** • 이용: 예술인 자녀(2개월~10세)
- 운영: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금: 무료
 - 위치: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 공고일** • 상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 참여제한
- 2024년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예술인
 -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 공고일** • 2월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 지원내용** • 활동비 및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 협업사업, 기획사업
- 리더예술인: 840~960만 원(6개월)
 - 참여예술인: 600~840만 원(5~6개월)
- 예술인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사업
- 예산: 기관별 139~349백만 원 내외
 - 규모: 기관별 20~50명

- 지원대상** •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 ※ 참여제한
 -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로 사업 3년 이상 연속 참여자(협업사업만 해당)
 -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신진)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 [지역문화재단]
 -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 공고일** • 1~3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700만 원)
- 전세자금대출(최대 1억 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공고일** • 생활안정자금대출 정기 | 전세자금대출 연 5회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규사업

- 지원대상** • 24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예술활동 지속 여부 확인 후 저축한 금액과 동일 금액 지원(반기 시 지급, 1인 최대 240만 원)
- 지원내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진예술인 포함,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 참여제한: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 공고일** • 상반기(예정)

예술인패스

- 지원내용** • 공연, 전시, 생활 속 할인 혜택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 한번이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던 사람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공고일** • 상시

※ 연중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철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발행일	2025년 3월 14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380
홈페이지	www.kawf.kr wci.kawf.kr
제작	(주)인디엔피
ISBN	979-11-92242-54-5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 산재 가입, 정보 변경, 해지 신청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02-3668-0200 | insure@kawf.kr | wci.kawf.kr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제도 운영
- 산재 가입, 정보 변경, 해지 승인
- 산재 승인 여부 결정
- 보험급여 지급

1588-0075 | total.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징수(보험료 납부 관련)
- 고지서 발행,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가상계좌 발급

1577-1000 | www.nhis.or.kr